



미국의 주류 표시 규정



김 영 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공학박사)

■ 목 차 ■

1. 서 언
2. 미국의 주류 표시근거 규정
3. 주요 주류의 의무표시 사항
4. 결 언

1. 서 언

상품 표시(Labelling)는 해당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는 도구이자, “선택의 권리(Right to Choose)”를 부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류를 포함한 식품표시의 경우에 각 국가에서는 법적인 의무규정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잘못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오인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정부의 식품관리는 출고 전 사전관리에서 출고 후 사후관리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이행하는 법적수단으로서 일반 기준·규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표시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과 더불어 경고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조·유통업체의 표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의 표시는 크게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충분한 정보제공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

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03-27)”에 설정된 주류별 표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주류에 있어 알콜함량의 표시와 함께 약주·탁주는 ‘살균제품’의 표시, 맥주의 경우 색상에 따라 ‘담색맥주’, ‘흑맥주’로의 표시 및 비열처리의 경우 ‘생맥주’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과실주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포도주, 사과주, 딸기주 등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색상에 따라 적, 백, 흥 등으로 표시 하고, 탄산가스를 함유한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한다. 소주는 증류식, 회석식으로 구분 표시한다. 위스키와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는 원료주 함량비율과 조성·산지에 따른 고유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리큐르는 인삼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 원료주의 조성이나 산지에 따라 특정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표시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우리의 주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복잡할 정도로 매

우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본 고는 미국에서 주류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성의 알콜, 담배 및 소화기국 (Department of the Treasury/Bureau of Alcohol, Tobacco & Firearms)”에서 최근 발간한 주류별 표시 매뉴얼 중 맥주 등 맥아발효 주류와 증류주의 의무표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미국의 주류 표시근거 규정

미국의 주류 표시규정은〈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알콜관리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에 의해 주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음주로 인한 건강경고표시는 “주류표시법(Alcoholic Beverage Labelling Act)”으로 관리하고, 세금과 관련된 표시사항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1〉 맥주(맥아발효 주류)의 표시 근거 규정

법령명	이행규정	규정명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FAA Act)	27 CFR Part 7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Malt Beverages
Alcoholic Beverage Labelling Act OF 1988 (ABLA)	27 CFR Part 16	Alcoholic Beverages Health Warning Statement
Internal Revenue Code(IRC)	27 CFR Part 25	Beer
	27 CFR Part 250	Liquors and Article from PuertoRico and the Virgin Island
	27 CFR Part 251	Importation of Distilled Spirits, Wine and Beer
	27 CFR Part 252	Exportation of Liquors

〈표 2〉 종류주의 표시 근거 규정

법령명	이행규정	규정명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FAA Act)	27 CFR Part 5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Distilled Spirits
Alcoholic Beverage Labelling Act OF 1988 (ABLA)	27 CFR Part 16	Alcoholic Beverages Health Warning Statement
Internal Revenue Code(IRC)	27 CFR Part 19	Distilled Spirits Plants
	27 CFR Part 250	Liquors and Article from PuertoRico and the Virgin Island
	27 CFR Part 251	Importation of Distilled Spirits, Wine and Beer
	27 CFR Part 252	Exportation of Liquors

3. 주요 주류의 의무표시 사항

가. 맥주(맥아 발효주류/Malt Beverage)

1) 상품명(brand name)

- 일반 사항 및 오인 표시

통상 주 상표 면에 "맥아발효주류(malt beverage)"라는 표시를 하고 그 밑에 상품명을 표시한다. 만약 표시대상 맥주가 상품명이 없이 판매된다면 병입업체(bottler), 포장업체(packer) 또는 수입업체(importer)가 상품명이 된다. 맥주의 저장기간, 원산지, 특성이나 특징 등의 표시는 금지된다.

• 활자크기(type size)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용기의 전면이어야 한다.

2) 분류와 활자 지정(class and type designation)

- 정의(definition)

맥아발효 주류의 품명(ale, beer, brown ale, golden larger, stout 등 별도 목록에 있는 분류)을 표시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용기의 전면이어야 한다.

3) 업체명과 주소(name and address)

- 요구사항

국내산(미국산)맥아발효 주류의 경우에는 생산자(병입자)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BREWED AND BOTTLED/PACKED BY", "BREWED BY" OR "BOTTLED/PACKED BY" 여기서 "BOTTLED BY"는 1갤론 이하의 용기에 병입 되었을 때 사용하고 "PACKED BY"는 1갤론을 초과하는 용기에 사용한다. 수입산 맥아발효음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업체명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한다. "IMPORTED BY", "SOLEAGENT" 또는 "SOLE U.S. AGENT"

- 정의

국내산의 경우 주소는 해당주류가 병입 또는 포장된 도시와 주를 의미하고,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된 사무지의 도시와 주를 명시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국내산의 경우 용기의 전면이어야 하고 수입산의 경우 용기의 전면, 후면, 측면도 가능하다.

4) 실용량(net contents)

- 일반사항

어떠한 크기의 용기도 가능하고, 실용량은 미국형단위로 표시되어야 하나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술 방식

- 실 용량이 1pint 미만의 경우에는 fluid ounces나 pint의 분수로 표시한다.
- 실용량이 1 pint, 1 quart 혹은 1 gallon 인 경우에는 정확히 그렇게 표시 한다.
- 1 pint 초과 1 quart 미만의 경우에는 pints와 fluid ounces 또는 quart의 분수로 표시한다.
- 1 quart 초과 1 gallon 미만의 경우에는 quarts, pints와 fluid ounces 또는 gallon의 분수로 표시한다.
- 1 gallon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gallons 과 galllon의 분수로 표시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이어야 한다.

5) 알콜 함량(alcohol content)

- 일반사항

알콜함량의 표시가 주 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표시 사항이다.

- 기술 방식

주 법에 의해 따로 표시방법이 정하여 있지 않다면 알콜함량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ALCOHOL(ALC) ____ % BY VOLUME(VOL)"

또는

"ALCOHOL(ALC) BY VOLUME(VOL) ____ %"

또는

" ____ % ALCOHOL(ALC) BY VOLUME(VOL)"

또는

" ____ % ALCOHOL(ALC)/VOLUME(VOL)"

알콜함량의 표시는 0.5% 이상인 경우에는 0.1% 단위까지 표시되어야 하고 0.5% 미만인 경우에는 0.01% 단위로 표시한다.

• 기타 표시사항

- "Low alcohol" : 알콜함량 2.5% 미만
- "Reduced alcohol" : 알콜함량 2.5% 미만
- "Non-alcoholic" : 알콜함량 0.5% 미만. 단 "CONTAINS LESS THAN 0.5% ALC BY VOL"이라는 표시가 "NON ALCOHOLIC"이라는 표시와 병기되어야 한다.
- "Alcohol free" : 알콜이 없는 경우에 한함(0.0%). 단 "ALCOHOL FREE"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0.0% ALC BY VOL"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활자크기(type size)

주 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다음과 같다.

-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40 fl. oz. 이하의 용기는 최대 3mm.
- 40 fl. oz. 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대 4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알콜함량에 관한 표시는 동일한 종류와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고 눈에 띠는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6) 식용색소 황색5호(FD&C YELLOW #5)

함유 표시

• 요구사항

식용색소 황색5호를 함유하고 있다면 "CONTAINS FD&C YELLOW #5"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7) 사카린(Saccharin)함유 표시

• 요구사항

사카린을 함유하고 있다면 "이 제품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 제품은 사카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실험동물에게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라는 의미의 다음의 영문 표기를 하여야 한다.

"USE OF THIS PRODUCT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 THIS PRODUCT CONTAINS SACCHARIN WHICH HAS BEEN DETERMINED TO CAUSE CANCER IN LABORATORY ANIMALS"

• 활자크기(type size)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

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8) 아황산(Sulfite)함유 표시

- 요구사항

10 ppm이상의 아황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CONTAINS SULFITE" 또는 "CONTAINS (A) SULFITE AGENT(S)".

- 활자크기(type size)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9) 아스파탐(Aspartame)함유 표시

- 요구사항

아스파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PHENYLKETONURICS : CONTAINS PHENYLALANINE"

- 활자크기(type size)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1/2 파인트(pint)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1/2 파인트(pint)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10) 건강 경고 표시

(Health warning statement)

- 요구사항

0.5%이상의 알콜함량으로 사람의 소비를 위해 미국에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류는 1989년 11월 18일 이후부터 임신부에 대한 주류의 섭취위험 경고와 운전 및 작업능률 저하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영문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GOVERNMENT WARNING:

(1)According to the Surgeon General, women should not drink alcoholic beverage during pregnancy because of birth defects.

(2)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 impairs your ability to drive a car or operate machinery, and may cause health problem.

- 기술 방식

"GOVERNMENT WARNING"은 대문자로서 진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표기는 진하지 않게 연속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3 리터(101 fl. oz.)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3mm,

- 237ml(8 fl. oz.) 초과 3 리터(101 fl. oz.)까지의 용기는 최소한 2mm.
- 237ml(8 fl. oz.) 이하의 용기는 최소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알기 쉽고 배경과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하고 1인치 당 글자 수가 다음과 같이 초과 되어서는 안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 활자크기 1 mm : 1인치당 최대 글자 수 40
 - 활자크기 2 mm : 1인치당 최대 글자 수 25
 - 활자크기 3 mm : 1인치당 최대 글자 수 12

11)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적용

모든 수입 맥아발효주류에 대하여 미국세관규정(U.S. Custom Service regulation)에 의해 적용된다.

• 기술형식

- "PRODUCT/PRODUCE OF _____" : 맥아발효주류가 제조/양조된 국가명
- "PRODUCED/BREWED IN" 또는 "PRODUCED/BREWED AND BOTTLED OR PACKED IN _____" : 맥아발효주류가 제조/양조되었거나 제조/양조 및 병입 또는 포장된 국가명"
- "PRODUCED/BREWED BY" 또는 "PRODUCED/BREWED AND BOTTLED OR PACKED BY _____" : 맥아발효주류가 제조/양조되었거나 제조/양조 및 병입 또는 포장된 곳의 제조자/양조자 또는 제조자/양조자 및 병입업체의 이름과 주소(국가 도는 도시와 국가)
- "_____ALE" : ale이 제조/양조된 곳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명 • 활자크기(type size) • 특별한 제한 규정 없음.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 <p>명료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 없으며,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p> |
|--|---|

나. 종류주 (Distilled Spirits)

1) 상품명(brand name)

- 일반사항 및 오인 표시
- 통상 주 상표면에 "종류주(distilled spirits)"라는 표시를 하고 그 밑에 상품명을 표시한다. 만약 표시대상 종류주가 상품명이 없이 판매된다면 병입업자(bottler), 포장업자(packer) 또는 수입업자(importer)가 상품명이 된다. 종류주의 저장기간, 원산지, 특성이나 특징 등의 표시는 금지된다.

• 활자크기(type size)

상품명에 대한 특별한 활자크기 제한 규정은 없음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표시위치는 용기의 전면이어야 한다.

2) 분류와 활자 지정

(class and type designation)

- 정의(definition)
- 종류주의 품명(bourbon whisky, gin, rum, scotch whisky, vodka 등 별도 목록에 있는 분류)을 표시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200ml 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이상으로 표시한다.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용기와 평행이고,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하며 배경과 차이가 나고, 다른 정보 표시 사항과 구분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용기의 전면이어야 한다.

3) 알콜 함량(alcohol content)

- 요구사항

알콜함량은 용량%로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____% ALCOHOL(ALC)BY VOLUME(VOL)"

- 선택사항

알콜함량은 요구사항인 용량%와 함께 "degrees proof"로 표시 할 수 있다. 이의 표시는 용량% 보다 두드러지지 않게 구분이 되게 하여 용기의 전면에 표시한다.

- 허용한계(tolerance)

표시되는 알콜함량은 제품의 실제 알콜함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병입시 발생되는 감소는 표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 100ml 당 600mg를 초과하는 고형물을 갖는 종류주는 0.25% 알콜용량
- 50ml 병입 종류주와 100ml 용기의 종류주는 0.25% 알콜용량
- 이외의 여타 종류주는 0.15% 알콜용량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용기와 평행이고,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하며 배경과 차이가 나고, 다른 정보 표시

사항과 구분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용기의 전면이어야 한다.

4) 업체명과 주소(name and address)

- 요구사항

국내산(미국산)증류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이름과 주소를 "BOTTLED BY", "DISTILLED BY", "DISTILLED AND BOTTLED BY"의 예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 Bottler, Packer, Filler, Distiller, Blender, Maker, Preparer, Manufacturer, Producer 수입 종류주의 경우에 수입 전에 병입 또는 포장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병입자, 포장업체 또는 충전업체(filler)의 이름과 주소가 "IMPORTED BY", "SOLE AGENT" 또는 "SOLE U.S. AGENT" 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입 종류주의 경우에 수입 후에 병입 또는 포장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병입자, 포장업체 또는 충전업체(filler)의 이름과 주소가 "BOTTLED BY", "IMPORTED AND BOTTLED BY", "IMPORTED BY AND BOTTLED FOR" 또는 "IMPORTED BY_____ AND BOTTLED BY_____ 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용기의 전면, 후면, 측면도 가능하다.

5)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적용

수입 전이나 수입후에 병입, 포장, 충전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종류주에 대하여 적용 된다.

- 기술형식

- "PRODUCT/PRODUCE OF _____" : 증류주가 제조된 국가명
- "PRODUCED IN/PRODUCED AND BOTTLED IN _____" : 증류주가가 제조 /제조 및 병입된 국가명"
- "PRODUCED BY/PRODUCED AND BOTTLED BY _____" : 증류주가가 제조 /제조 및 병입된 곳의 제조자/제조자 및 병입업체의 이름과 주소(국가 도는 도시 와 국가)
- "_____ BRANDY" : BRANDY가 제조된 곳의 국가명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명료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 없으며,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6) 실용량(net contents)

- 요구사항

증류주는 미터표준법으로 병입, 포장, 충전되어야 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7)색소(coloring materials)함유 표시

- 표시 명세

- 색소물질은 다음의 예와 같이 상표에 표시될 수 있다.

"COLORED WITH CARAMEL",
"CERTIFIED COLOR ADDED",
"COLORED WITH GRAPESKIN EXTRACT",
"CARAMEL AND CERTIFIED COLOR ADDED",
"COLORED WITH CARAMEL, ANNATTO
AND GRAPESKIN EXTRACT"

- 황색5호를 제외한 단일 인공색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은 "ARTIFICIALLY COLORED"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증류주에 따라 인공색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증류주에 따라 카라멜의 표기가 필요 없는 종류도 있다.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나 증류주에 따라 전면에만 인공색소의 표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8) 나무 처리(treatment with wood)

- 표시 명세

나무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칩(chips), slabs, 추출물(extracts) 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COLORED AND FLAVORED WITH WOOD_____"

- 적용

위스키와 브랜디에만 나무처리 하는 것을 적용한다(오크통과 접촉하는 것은 제외임).

-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의 브랜디 나무처리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ATF에 의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을 때와 최종 브랜디 용량의 2.5%를 초과하지 않았을 때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이어야 한다.

9) 식용색소 황색5호(FD&C YELLOW #5)

함유 표시

- 요구사항

증류주가 식용색소 황색5호를 함유하고 있다면 "CONTAINS FD&C YELLOW #5"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10) 사카린(Saccharin)함유 표시

- 요구사항

사카린을 함유하고 있다면 "이 제품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 제품은 사카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실험동물에게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라는 의미의 다음의 영문 표기를 하여야 한다.

"USE OF THIS PRODUCT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 THIS PRODUCT CONTAINS SACCHARIN WHICH HAS BEEN DETERMINED TO CAUSE CANCER IN LABORATORY ANIMALS"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11) 아황산(Sulfite)함유 표시

- 요구사항

10 ppm이상의 아황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

- 다. "CONTAINS SULFITE" 또는 "CONTAINS (A) SULFITE AGENT(S)".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12) 중류원료명의 설명 (commodity statement)

- 정의
다음 유형의 중류주(그룹 1)는 중성주정(neutral spirit)의 백분율과 중류된 원료를 표기하여야 한다.
 - Neutral Spirits/Alcohol produced by redistillation
 - Vodka produced by redistillation
 - Grain Spirits produced by redistillation
 - Blended Whisky
 - Blended Bourbon Whisky
 - Blended Wheat Whisky
 - Blended Rye Whisky
 - Blended Malt Whisky
 - Blended Rye Malt Whisky
 - Blended Corn Whisky
 - Spirit Whisky
 - Compounded Gin
 - Redistilled Gin
 - Blended Applejack
- 다음 유형의 중류주(그룹 2)는 중성주정(neutral spirit)의 중류된 원료를 표기하여야 한다.
 - Neutral Spirits/Alcohol produced by original distillation
 - Vodka produced by original distillation
 - Grain Spirit produced by original distillation
 - Distilled Gin
- 기술형식
 - 상기의 그룹 1에 해당하는 중류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____% NEUTRAL SPIRITS DISTILLED FROM ____"
첫 번째 빈칸은 백분율을 표기하고, 두 번째 빈칸은 품목의 이름을 표기한다(예 : 옥수수 또는 곡물). 또는
"____% NEUTRAL SPIRITS"
첫 번째 빈칸은 백분율을 표기하고, 두 번째 빈칸은 품목의 이름을 표기한다(예 : 포도 또는 과일).
 - 상기의 그룹 2에 해당하는 중류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DISTILLED FROM ____" 빈칸에는 품목의 이름을 표기한다(예 : 호밀 또는 곡물)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13) 저장기간의 표기(statement of age)

- 요구사항

저장기간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유형의 위스키는 4년 이상이어야 한다.
- 브랜디는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증류주는 다양한 연령표기나 상징물(도안등)로 표기한다
- 증류주는 증류일자를 표기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14) 증류에 대한 표기(state of distillation)

- 적용

- 미국에서 생산된 위스키에만 적용한다.
- 다음의 위스키 유형에 적용한다.

Bourbon Whisky, Rye Whisky, Wheat Whisky, Malt Whisky, Rye Malt Whisky, Corn Whisky, Straight Bourbon Whisky, Straight Rye Whisky, Straight Wheat Whisky, Straight Malt Whisky, Straight Rye Malt Whisky, Straight Corn Whisky, Straight Whisky, Whisky Distilled From Bourbon Mash, Whisky

Distilled From Rye Mash, Whisky

Distilled From Wheat Mash, Whisky

Distilled From Malt Mash, Whisky

Distilled From Rye Malt Mash

- 요구사항

증류에 대한 표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

- 위스키가 미국에서 증류되자 않았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표기한다.
- 위스키가 미국에서 증류된 경우에도 회사명과 주소지를 표기하지만 용기의 전면에 표기하지 않는다.

- 기술형식

- "DISTILLED IN _____" : 빈칸에는 주 이름을 표기한다.
- "_____ STRAIGHT BOURBON WHISKY" : 빈칸에는 주 이름을 표기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200ml을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2mm,
- 200ml이하의 용기는 최소한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쉽게 표시되어야 하고 배경과 차이가 나며, 다른 정보 표시사항 보다 눈에 띠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15) 건강 경고 표시

(Health warning statement)

- 요구사항

0.5%이상의 알콜함량으로 사람의 소비를 위해 미국에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류는 1989년 11월 18일 이후부터 임신부에 대한 주류의 섭취위험 경고와

운전 및 작업능률 저하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영문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GOVERNMENT WARNING :

- (1) According to the Surgeon General, women should not drink alcoholic beverage during pregnancy because of birth defects.
- (2)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 impairs your ability to drive a car or operate machinery, and may cause health problem.

• 기술 방식

"GOVERNMENT WARNING"은 대문자로서 진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표기는 진하지 않게 연속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활자크기(type size)

- 3 리터(101 fl. oz.)를 초과하는 용기는 최소한 3mm,
- 237ml(8 fl. oz.) 초과 3 리터(101 fl. oz.)까지의 용기는 최소한 2mm.
- 237ml(8 fl. oz.) 이하의 용기는 최소 1mm.

• 명료성(legibility) 및 표시위치(placement) 일기 쉽고 배경과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하

고 1인치 당 글자 수가 다음과 같이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표시위치는 전면, 후면, 측면이 가능하다.

- 활자크기 1 mm : 1인치당 최대 글자 수 40
- 활자크기 2 mm : 1인치당 최대 글자 수 25
- 활자크기 3 mm : 1인치당 최대 글자 수 12

4. 결언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주류 표시 의무규정은 표시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류의 유형에 따른 특성의 표기와 용기의 크기에 따른 표시 활자의 크기 지정까지 업체와 소비자를 배려하고 있다. 표시에 대한 규정도 점차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주류에 대해 국제간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표시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으로의 주류 수출시는 상기의 연방정부의 표시규정과 함께 주 정부의 개별표시규정도 확인하여 표시위반으로 인한 억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주류 표시규정의 개정시 이를 반영하여 과학화, 선진화 및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겠다.